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805

발의연월일: 2024. 10. 21.

발 의 자:정동만·김성원·이인선

이상휘 · 최은석 · 박성민

우재준 • 구자근 • 김위상

김선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0년 이후 자유업으로 유지되던 물류창고업을 2012년 등록제로 전환하여 바닥 및 토지 면적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관계 부처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미등록 사업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 당시 등록기준이 난해하여 이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최초 등록기간을 놓쳐 미등록 상태에 있게 되었으나 형벌에 해당하는 벌칙으로 인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존재함에 따라, 제재조치 수준을 완화하여 미등록 업체들의 자진등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소업체의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영세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벌칙에

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법률 제 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4호의2를 삭제한다.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65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7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처분	
행위로 얻은 이익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	<u><</u> 삭 제>
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	
류창고업을 경영한 자. 다만,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	
을 경영한 자는 제외한다.	
4의3. ~ 7. (생 략)	4의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과태료) <u><신 설></u>	제67조(과태료) ① 제21조의2제1
	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1조의

	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u>자는 제외한다.</u>
<u>①</u> ~ <u>③</u> (생 략)	<u>②</u> ~ <u>④</u> (현행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와 같음)